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38
----------	-------

발의연월일 : 2026. 5. 13.

발 의 자 : 서삼석 · 임미애 · 김정호
박용갑 · 조계원 · 문대림
김원이 · 문금주 · 신정훈
이정문 · 차지호 · 양부남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반입·이식 대상이 아닌 중국산 단김 등의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거나 식용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종자의 소지·유통·보관 또는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최근 중국산 단김의 불법 생산·양식이 잇달아 적발되고 시중에 다량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함. 단김의 경우 시료 채취를 통한 유전자 분석으로만 구분할 수 있어 생산업자가 악의적으로 중국산 단김을 유통하는 경우 관리가 어려워 국산 김으로 속여서 판매될 경우 국산 김 브랜드 하락과 김 산업 생태계 위축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에서 허가된 5종의 김 원료를 제외한 불법 종자로 생산된 중국산 단김의 생산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수산종자 유통 과정의 시료 수거 및 검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수산 종자 유통

통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원료 검사에 불법 수산종자 시료를 허위 제출하거나 수산종자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영업 정지 등의 처분 근거를 신설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32조 및 제41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1호(중전의 제10호) 중 “제32조제2항”을 “제32조 제3항”으로 한다.

10. 제32조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불법 수산종자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종에 대하여 수산종자가 유통되기 전에 수산종자생산업자로부터 필요한 최소량을 수거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은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산종자생산업자는 지정된 시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1조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제32조제2항”을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9.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로 시료를 제공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6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p>1. ~ 9. (생략)</p> <p><신설></p> <p>10. 제32조제2항에 따른 생산이나 판매를 중지하게 한 수산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경우</p> <p>② ~ ④ (생략)</p> <p>제32조(수산종자의 유통 조사 등) ① (생략)</p> <p><신설></p>	<p>제26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취소 등) ① ----- ----- ----- ----- ----- ----- ----- ----- ----- ----- ----- ----- ----- -----</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제32조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p> <p>11. 제32조제3항----- -----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32조(수산종자의 유통 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u></p>

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는 불법 수산종자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종에 대하여 수산종자가 유통되기 전에 수산종자생산업자로부터 필요한 최소량을 수거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은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산종자생산업자는 지정된 시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 목적 · 시간 및 조사자 신분 등의 사항을 서면에 적어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④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제41조(벌칙) -----

<p>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8. (생략)</p> <p><u><신설></u></p> <p>9. <u>제32조제2항</u>에 따른 생산이나 판매를 중지하게 한 수산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자</p> <p>10. (생략)</p>	<p>-----</p> <p>-----.</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로 시료를 제공한 자</u></p> <p>10. <u>제32조제3항</u>-----</p> <p>-----</p> <p>-----</p> <p>11. (현행 제10호와 같음)</p>
---	---